##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8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박홍배·강득구·강훈식

김남근 · 김현정 · 민병덕

송재봉 • 이기헌 • 이광희

이상식 • 이수진 • 정진욱

한준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 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 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가 도입되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적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이사"를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위원회) ①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	
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	2. <u>제9조제6항</u>
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	제9조(임원) ①
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	
한 <u>이사</u> 와 감사(감사위원회를	<u>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u>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u>이사로 구분한다)</u>
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	
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	
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 <신 설>

### ③ (생략)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 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 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3년 이
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
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
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u>⑥</u>
<u>제5항</u>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